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04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3. 3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317,6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4. B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한 2023. 8. 23., 지연손해금을 연 1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의 개인회생절차신청으로 2019. 3.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C조합에 2019. 7. 9. 9,667,720원(=원금 9,500,000원+이자 167,7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B으로부터 미환급보증료 273,280원을 회수하고, 당시 확정지연손해금은 74원이며, 이 사건 구상금과 관련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33,996원을 지출하여, 2020. 10. 13. 현재 구상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317,624원이다.

대위변제금 잔액	법적절차비용	이자기산일	이자종료일	이율(%)	기간이자	합계
9,394,514	733,996	2019.7.9.	2020.10.13.	10.00	1,189,114	11,317,624

라. 한편 B은 2019. 6. 14. 그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E(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6. 18. 피고에게 34,380,9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6. 14.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9. 3. 13. B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9. 7. 9. 원고가 B의 C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6호증,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6. 14. 즈음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F(도로) 가액 합계 131,910,31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47,324,166원[=개인 자격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27,940,000원(갑 제4호증 '대출거래정보'란 기재액)+사업자 자격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36,000,000원(갑 제4호증 '기업정보일보'란 기재액1))+G에 대한 채무 32,406,575원(경매 청구액)+피고에 대한 채무 50,977,591원(경매 청구액)]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따라서 B이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채권액 11,317,6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또한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1. 16.부터 B과 돈 거래를 해온 실제 채권자로서 B이 2019. 4. 12. 차용증을 써주며 2019. 5.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어겨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허위의 채권자가 아니고, B의 신용 문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B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수년 동안 담보 없이 거래를 해오다가 B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을 보면, 피고는 B의 경제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가액배상의 방법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380,99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으로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라 B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7.59㎡(근린생활시설)

2층 46.79㎡(주택)

2. [토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73㎡

끝.

별지2

채권의 표시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중복)) 부동산임의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34,380,996원의 배당금
지급청구채권 중 11,317,624원에 해당하는 부분
끝.

1) H회사 5,000,000원+I은행 1,000,000원+J은행 20,000,000원+C조합 10,000,000원